



COVID-19

임대 생활고(Rent Hardship)

임대 생활고 신청 방법이 전보다 쉬워 졌습니다

직장에서 근로 시간이 단축되거나 실직한 경우, 중간 재인증 신청서를 (Interim Recertification application) **즉시** 작성하십시오.

대기 기간은 없습니다. 신청 방법:

뉴욕시 주택국(New York City Housing Authority, NYCHA)의 셀프 서비스 포털(Self-Service Portal) selfserve.nycha.info을 방문하십시오.

NYCHA의 고객 안내 센터(Customer Contact Center, CCC)에 718-707-7771로 전화하십시오(안내가 나오면 "5"번 메뉴 선택), 또는

자산 관리 사무소(Property Management Office)에 전화하여 서면 신청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.

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, NYCHA 주민은 소득 손실을 **본인 인증**할 수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중간 재인증을 제출할 때 요구되는 증빙 자료가 이번에는 요구되지 않습니다.

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그 다음 월에 대해 임차료가 조정됩니다. NYCHA는 신청서가 처리될 때까지 부분 임차료 납부를 받을 예정입니다.

자세한 내용은 on.nyc.gov/rent-hardship-assistance를 참조하십시오.